

국회의원 ‘꼼수입법활동’ 이대로 둘 것인가? - “유권자가 변해야 한다[4]” -

2016. 2.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 김도연

I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국회의 기본적인 역할과 권한으로는 입법, 재정, 일반국정, 외교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는 입법권한은 국가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인 만큼 국회의 주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대 국회 들어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법들은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수년 동안 계류되어 있고, 한편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입법 권한을 실적 쌓기용으로 악용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19대 국회 의원들의 주요 권한인 입법활동 행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짚어 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19대 국회 의원 입법 활동 현황

2016년 1월 현재 19대 국회 법안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만7천593건이며, 이 중 7천206건이 처리되어 처리율 41%다. 처리된 법률안 중 가결 건수는 2천550건으로 가결율 14.5%다. 이 중 개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처리된 법안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 대표발의는 1만5천352건이며 이중 5천334건을 처리해 처리율 34.7%를 기록했다. 처리 중 가결은 1천55건이며 비율은 6.9%, 대안반영은 3천818건으로 24.9%다. 반면, 제출 법안의 65.3%인 1만18건은 계류상태다(【표 1】참조).

처리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대안반영법률안(구 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견해는 현재 논란 중이다. 대안반영법률안은 유사 이름의 법률안이 여러 개 발의된 경우 각 안의 내용을 반영해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에 제안하는 것으로 가결과는 별도로 ‘대안(代案)’으로 분류된다. 여러 가지 유사법안을 건건이 처리하는 것보다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고안된 방식이며 대안에 반영된 원안은 본회의 가결 절차에 상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만 보면 가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내용상 대안반영법률안은 위원장안으로 상정되어 법률에 반영되지만 형식상으로는 가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입법실적을 평가할 때 발의된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법률에 반영되는지가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며 ‘가결뿐만 아니라 대안반영 법률안도 포함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대안반영법률안의 경우,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우후죽순(雨後竹筍)격으로 유사법안을 발의하여 대안반영 법률안으로 실적을 올리는 전형적인 입법 포폴리즘에 편승하거나 일부의 경우에는 동료 의원의 법안을 표절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모두 가결 실적으로 인정할 경우 편법적인 입법활동에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 반론도 만만찮다. 따라서 실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대안반영법률안’을 ‘가결’과 구분지어 분류해 놓았다.

【표 1】 제19대 국회 법안처리 현황

(기준일: 2016.1.15.)

구분		제출		처리								계류	
		건	비율 (-/A)	소계		법률반영				미반영			
						가결		대안반영법률안		철회/폐기/ 부결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의원	의원	15,352	87.3	5,334	34.7	1,055	6.9	3,818	24.9	461	3	10,018	65.3
	위원장	1,153	6.6	1,151	99.8	1,150	99.7	0	0	1	0.1	2	0.2
	소계	16,505	93.8	6,485	39.3	2,205	13.4	3,818	23.1	462	2.8	10,020	60.7
정부제출		1,088	6.2	721	66.3	345	31.7	370	34	6	0.6	367	33.7
총계(A)		17,593	100	7,206	41	2,550	14.5	4,188	23.8	468	2.7	10,387	59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검색일: 2016. 1. 15)

2. 대표발의 법안이 ‘대안반영법률안’으로만 처리된 의원

19대 국회 법안 발의 및 제출 건수는 역대 국회 중 최다이다. 법안을 많이 발의 했지만 19대 국회임기가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정작 처리율은 50%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개별 의원 대표발의 법안(위원장안 제외)의 처리율만 보면 34.7%로 전

체 처리율 41%보다 낮다. 한편, 19대 국회 의원법안처리 행태 중 특이점은 의원 개인이 대표발의 한 법안이 대안으로만 처리된 의원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총 52명의 의원이 대표발의 법안으로 처리된 유형이 ‘대안반영법률안’이다. 문재인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법안 1건도 처리 못해 처리율 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제19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이 ‘대안반영법률안’으로만 처리된 의원
(법안기준: 2016.1.15. 소속정당은 현재)

연번	의원명	소속정당	발의 건	비고(건)	연번	의원명	소속정당	발의 건	비고(건)
1	강동원	더불어민주	98	대안반영 24	28	유기준	새누리	11	대안반영 4
2	강창희	새누리	3	대안반영 1	29	유승민	새누리	13	대안반영 3
3	김광림	새누리	32	대안반영 12	30	유인태	더불어민주	9	대안반영 1
4	김상민	새누리	47	대안반영 17	31	윤호중	더불어민주	43	대안반영 11
5	김영우	새누리	26	대안반영 3	32	윤후덕	더불어민주	49	대안반영 16
6	김용태	새누리	25	대안반영 7	33	이강후	새누리	47	대안반영 21
7	김재경	새누리	24	대안반영 7	34	이목희	더불어민주	47	대안반영 14
8	김제남	정의당	65	대안반영 20	35	이미경	더불어민주	19	대안반영 6
9	김종훈	새누리	11	대안반영 5	36	이병석	새누리	15	대안반영 4
10	김태호	새누리	11	대안반영 1	37	이상일	새누리	35	대안반영 16
11	김한길	국민의당	9	대안반영 1	38	이우현	새누리	19	대안반영 6
12	김현미	더불어민주	32	대안반영 7	39	이재오	새누리	11	대안반영 2
13	김희국	새누리	29	대안반영 11	40	이종걸	더불어민주	71	대안반영 15
14	노철래	새누리	17	대안반영 4	41	이학재	새누리	28	대안반영 9
15	문대성	새누리	30	대안반영 1	42	이해찬	더불어민주	8	대안반영 3
16	문재인	더불어민주	4	처리율 0%	43	정두언	새누리	5	대안반영 1
17	민병두	더불어민주	89	대안반영 18	44	정세균	더불어민주	12	대안반영 5
18	민현주	새누리	43	대안반영 11	45	정우택	새누리	37	대안반영 7
19	박병석	더불어민주	26	대안반영 6	46	주호영	새누리	28	대안반영 7
20	박원석	정의당	42	대안반영 7	47	최경환	새누리	6	대안반영 2
21	박지원	무소속	18	대안반영 2	48	최재성	더불어민주	33	대안반영 5
22	송광호	의원직상실	18	대안반영 8	49	홍의락	더불어민주	18	대안반영 4
23	송호창	더불어민주	23	대안반영 6	50	홍의표	더불어민주	44	대안반영 5
24	신기남	더불어민주	17	대안반영 5	51	홍종학	더불어민주	49	대안반영 14

연번	의원명	소속정당	발의 건	비고(건)	연번	의원명	소속정당	발의 건	비고(건)
25	심상정	정의당	39	대안반영 5	52	황우여	새누리	4	대안반영 2
26	심윤조	새누리	25	대안반영 6	53	황진하	새누리	18	대안반영 6
27	원혜영	더불어민주	39	대안반영 7	총계	53명		1521	대안반영 391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검색일: 2016. 1. 15)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 중 대표발의법안 처리가 ‘대안반영법률안’ 분류된 의원은 약 15명이며, 7명은 대표발의 법안이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표 3】 참조).

【표 3】 제19대 국회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 중 대표발의 법안이 ‘대안반영법률안’ 등으로 처리된 의원
(법안기준: 2016.1.15. 소속정당은 현재)

연번	의원명	소속정당	발의 건	비고(건)	연번	의원명	소속정당	발의 건	비고(건)
1	안철수	국민의당	13	대안반영 6	13	박맹우	새누리	15	대안반영 2
2	권은희	국민의당	11	대안반영 2	14	신상진	새누리	19	대안반영 5
3	이완구	새누리	4	대안반영 2	15	오신환	새누리	9	
4	김무성	새누리	6	대안반영 1	16	이개호	더불어민주	40	대안반영11
5	이정현	새누리	8	대안반영 2	17	정미경	새누리	11	
6	박명재	새누리	70	대안반영 8	18	홍철호	새누리	21	
7	양창영	새누리	35	대안반영 7	19	신문식	더불어민주	1	
8	이종배	새누리	21	대안반영 1	20	안상수	새누리	1	
9	신정훈	더불어민주	17	대안반영 2	21	장정은	새누리	4	
10	배덕광	새누리	22	대안반영 2	22	천정배	국민의당	2	
11	박광온	더불어민주	41	대안반영 3	총계	22명/31명 중		475	대안반영 55
12	나경원	새누리	4	대안반영 1					

3. 일명 ‘꼼수 법안 처리’ 유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한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법률안으로 가결되거나 처리되는 일련의 과정은 개별 의원으로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그들만의 ‘노하우’로 높은 가결율 및 처리율을 보인다. 일명 ‘꼼수 법안 처리’의 첫 번째 유형으로는 기존의 법안 중 벌금액 등이 법안 제정 당시 물가수준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맞춰

별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의 경우, 이건의 여지없으므로 단기간에 가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안 제정 실태를 보면 강창일 의원 5건, 권성동 의원 6건, 김광진 의원 6건, 김성태 의원 5건, 김정훈 의원 4건, 배기운 前 의원 17건, 신계륜 의원 9건, 안효대 의원 11건, 이낙연 前 의원 7건, 주승용 의원 8건, 홍영표 의원 8 건 등이다.

다음 유형으로는 기존의 법률안에서 조사나 단어 등을 바꿔 처리율을 높이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현행법에서 어떤 법률안의 특정 직업군의 결격사유를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하는 경우, 금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는 경우다. 이러한 경우, 법안명과 내용은 전혀 달라도 용어를 변경해야하는 법은 다수이므로 이 같은 유형의 법안만 골라내어 용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법률안 처리를 한 대표적 의원으로는 최규성 의원이 20건, 최민희 의원 6건, 심재권 의원 5건, 오영식 의원 4건 등이다.

기타 자구수정 및 추가 등이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에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 단순히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유형을 대표적으로 활용한 의원은 이명수 의원이다. 이 의원의 처리 법률안 중 11건이 “세종특별자치시” 추가의 건이며 4건은 업무정지 기간 조정에 관한 것이다(<첨부> 참조). 기타 근거규정 및 법체제 정비 등을 이유로 처리율을 높인 경우도 있었다.

물론 상기에서 처리된 법안들도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의 법률안 개정 및 제정에 몰두 하다 보면 지역구 주민이나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민생법안 등의 제정에 소홀하기 쉽다.

Ⅲ 맺는 말

입법의 권한은 국회의 주요 권한이다. 국회의원은 입법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여 지역구 및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안에 대해 연구하고 발의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의 법안 처리 개수를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 보다는 법안 내용을 평

가하는 정성적인 평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19대 국회의 법안 발의는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여 법안을 일일이 평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발의단계부터 인기에 편승하는 포퓰리즘 법안이나 법안이 처리된 이후의 꼼수 법안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질의 법안을 만드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첨부> 제19대 국회 법안 처리 백태

(법안기준 : 2016.01.15., 소속정당은 현재.)

연번	의원명 (정당)	건수 (전체개결)	비율 (%)	법 안	내용	비고
1	강기운 (새누리)	3 (3)	100	공탁법 일부개정	법문표현정비 (임명, 위촉 표현 정비)	
2				법관징계법일부개정		
3				축산계열회사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	강창일 (더불어 민주)	5 (18)	27.8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	벌금액상향 조정	
5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6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				산업디자인진흥법일부개정		
8				계량에관한 법률 일부개정		
9	경대수 (새누리)	2 (9)	22.2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	기간조정 (업무정지)	
10				염업조합법일부개정		
11	권성동 (새누리)	10 (18)	55.6	신탁법 일부개정	벌금액상향 조정	
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3				감사원법 일부개정		
1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금고형 삭제 (징역형으로 통일)	
17				소년법 일부개정		
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	김광진 (더불어민 주)	6 (9)	66.7	국방과학연구소법일부개정	벌금액상향 조정	
22				방어해면법일부개정		

연번	의원명 (정당)	건수 (전체가결)	비율 (%)	법 안	내용	비고
23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		
24				통합방위법일부개정		
25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및보상에 관한법률일 부개정		
26				지뢰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	김성태 (새누리)	5 (9)	55.6	노동위원회법일부개정	벌금액상향 조정	
28				기상산업진흥법일부개정		
29				폐기물의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				직업안정법일부개정		
31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32	김우남 (더불어민 주)	4 (30)	13.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결격사유 변경	
33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4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3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36	김정훈 (새누리)	4 (5)	8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일부개정	벌금액상향 조정	
3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일부개정		
38				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		
39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		
40	문정림 (새누리)	7 (17)	41.2	의료기기법일부개정(2013.02.15.)	기간조정 (업무정지)	
41				약사법 일부개정		
42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43				의료기본법일부개정		
4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45				혈액관리법일부개정		
46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7	배기운 (더불어민 주)	17 (26)	65.4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	벌금액상향 조정	의원직상실
48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		
49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				어촌·어항법일부개정		

연번	의원명 (정당)	건수 (전체가결)	비율 (%)	법 안	내용	비고
51				염업조합법일부개정		
5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일부개정		
53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54				농어업재해대책법일부개정		
55				해양심층수의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				한국해운조합법일부개정		
57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일부개정		
58				농지법일부개정		
59				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		
60				항로표지법일부개정		
6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		
62				선박법일부개정		
63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64	신경민 (더불어 민주)	3 (3)	100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일부개정	벌금액상향 조정	
65				재외동포재단법일부개정		
66				한국국제협력단법일부개정		
67	신계륜 (더불어 민주)	9 (14)	64.9	하수도법일부개정	벌금액상향 조정	
68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일부개정		
69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70				한국환경공단법일부개정		
71				기상법일부개정		
72				석면안전관리법일부개정		
73				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		
74				환경범죄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		
76	심재권 (더불어민 주)	5 (8)	62.5	한국국제협력단법일부개정	자구수정 (금지산자, 한정치산자를 성년후견, 한정후계 제도로 변경)	
77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일부개정		
78				해외이주법일부개정		
79				남극활동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연번	의원명 (정당)	건수 (전체가결)	비율 (%)	법 안	내용	비고
80				재외동포재단법일부개정		
81	안홍준 (새누리)	2 (6)	33.3	여권법일부개정	벌금액상향 조정	
8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	안효대 (새누리)	11 (13)	84.6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일부개정	벌금액상향 조정	
84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5				해양생태계의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				도선법일부개정		
87				비료관리법일부개정		
88				사료관리법일부개정		
89				인삼산업법일부개정		
90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1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				축산계열회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				선박직원법일부개정		
94	여상규 (새누리)	2 (5)	40	전시산업발전법일부개정	자구수정 (금지산자, 한정치산자를 성년후견, 한정후계 제도로 변경)	
9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96	오영식 (더불어민 주)	4 (8)	50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일부개정	자구수정 (금지산자, 한정치산자를 성년후견, 한정후계 제도로 변경)	
97				전자문서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9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		
100	유승우 (무소속)	6 (8)	75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	벌금액상향 조정	
101				의무소방대설치법일부개정		
102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		
103				온천법일부개정		
104				유선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		
105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		
106	이낙연 (더불어 민주)	7 (14)	50	공인노무사법일부개정	벌금액상향 조정	현 전남도지사
107				건설기계관리법일부개정		

연번	의원명 (정당)	건수 (전체가결)	비율 (%)	법 안	내용	비고
108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09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0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1				6·25 전사자유해의발굴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2				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 일부개정		
113	이명수 (새누리)	15 (20)	75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세종특별 자치시 추가	
114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11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7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개정		
11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119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0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1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2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		
123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24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기간조정 (업무정지)	
125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6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12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128	주승용 (국민의당)	8 (24)	33.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별금액상향 조정	
129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130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		
131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32				지하수법 일부개정		
1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		
134				하천법 일부개정		

연번	의원명 (정당)	건수 (전체가결)	비율 (%)	법 안	내용	비고
135				도시공원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36	최규성 (더불어 민주)	20 (25)	80	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자구수정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성년후견, 한정후계 제도로 변경)	
137				수의사법일부개정		
138				식물방역법일부개정		
139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40				축산계열화사업에관한 법률 일부개정		
141				동물보호법일부개정		
142				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		
143				농약관리법일부개정		
144				축산법일부개정		
145				한국마사회법일부개정		
146				향로표지법일부개정		
147				원양산업발전법일부개정		
148				도선법일부개정		
149				선박투자회사법일부개정		
150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일부개정		
151				어선법일부개정		
152				어장관리법일부개정		
153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		
154				어선원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55				염업조합법일부개정		
156	최민희 (더불어 민주)	6 (8)	75	전자서명법일부개정	자구수정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성년후견, 한정후계 제도로 변경)	
157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8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9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0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		
161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일부개정		
162	한선교 (새누리)	4 (5)	80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금고형 삭제 (징역형으로 통일)	
163				원자력진흥법 일부개정		
16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일부개정		
165				광주과학기술원법일부개정		
166	홍영표	8	88.9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별금액상향	

연번	의원명 (정당)	건수 (전체가결)	비율 (%)	법 안	내용	비고
	(더불어민 주)	(9)		일부개정	조정	
167				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		
168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9				국립생태원의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0				소음·진동관리법일부개정		
171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2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3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74	김윤덕 (더불어민 주)	2 (8)	2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결격사유 변경	
17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176	박민수 (더불어민 주)	2 (7)	28.6	국제사법 일부개정	자구수정 (금치산자)	
17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8	박남춘 (더불어민 주)	2 (6)	33.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행정기관 서명날인 추가	
179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180	설훈 (더불어민 주)	4 (5)	80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	근거규정 정비	
18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3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184	류지영 (새누리)	2 (9)	22.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체계정비	
185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		
186	양승조 (더불어민 주)	3 (5)	60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계 공무원 역할 강화	
18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18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